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39호서식] <개정 2014.8.7>

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 리 기 간	즉시

신고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임대차량	차량번호
	종류
	차명

반환받은 날
반 환 사 유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

처 리 절 차				
신고서 작성 →	접 수 →	검 토 →	수 리 →	통 보
신고인	처리기관 : 특별시・광역시・도・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 (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 부서)			신고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